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87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8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송언석
이상휘 · 김용태 · 강명구
김승수 · 김태규 · 이준석
윤상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 · 상담 · 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, 연령 · 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·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,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시 · 도지사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 연령,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, 방문 · 상담,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 · 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

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13조의2 신설).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고독사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

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고독사위험자 중 연령,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(이하 “고독사고위험군”이라 한다)을 선별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부 확인, 방문·상담 및 관련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별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·관리를 위하여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 중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·가스·수도의 사용 현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독사고위험군을 선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과 지원의 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, 본인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선별의 기준·절차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니터링 및 관리의 방법, 제4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2(고독사고위험군의 선별 및 관리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고독사위험자 중 연령, 질환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발생 위험이 특히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(이하 “고독사고위험군”이라 한다)을 선별할 수 있다.</u> <u>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별된 고독사고위험군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부 확인, 방문·상담 및 관련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③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선별 및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·관리를 위하여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이 보유하는 정보 중 필요한 정보</u>

의 제공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
요청할 수 있으며, 고독사고위
험군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
받아 전기·가스·수도의 사용
현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정보를 「지능정보화
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
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
모니터링할 수 있다.

④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
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독
사고위험군을 선별한 때에는
지체 없이 그 사실과 지원의
내용을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,
본인이 모니터링 및 관리를 원
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
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
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선별의 기준
·절차,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
모니터링 및 관리의 방법, 제4
항에 따른 통지의 방법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정한다.